

# 소규모재건축사업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

「면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제2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4항,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금오동 한양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감정평가법인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7. 21.  
의 정 부 시 장

## 1. 사업내용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 업 명        | 금오동 한양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           |
| 시 행 자        | 금오동 한양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(조합장 김정석) |
| 사업위치         | 금오동 398번지 외 8필지              |
| 구역면적         | 8,176m2                      |
| 층 수          | 지하1층/지상17층                   |
| 용 도          | 공동주택 3개동 및 부대·복리시설           |
| 연 면 적        | 30,037.32㎡                   |
| 세 대 수        | 199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수 | 심사결과 상위 1개 업체                |

2. 공고기간: 2026. 7. 21. (화) ~ 7. 27. (월) (공휴일 포함 7일)

## 3. 신청서 접수일시 및 장소

- 가. 접수일시: 2026. 7. 28. (화) 09:00 ~ 18:00
- 나. 접수장소: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 (제2별관 3층)
- 1) 직접 방문접수(우편접수 등 불가)
  - 2)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(인감날인) 및 재직증명서 제출
  - 3) 접수대장에 감정평가법인의 인감을 날인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)

## 4. 제출서류

- 가.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[붙임1] 및 자기평가서[붙임2]

나. 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자격수첩 사본, 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인감증명서(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), 인가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## 5. 감정평가법인 선정결과 공개

- 가. 공개일자: 2026. 8. 중 예정
- 나. 공개방법: 우리 시 홈페이지(<http://www.ui4u.net>) 도시재생과 부서자료실에 게재  
(정보공개 > 행정정보공개 > 부서자료실)

## 6. 평가수수료 결정

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「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**할인율 등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평가수수료를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**

## 7. 감정평가법인등 선정

- 가.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.
- 1) 감정평가사의 수
  - 2) 감정평가 수행 실적
  - 3) 기존의 참여 실적
  - 4) 법규 준수 등 이행도
- 나.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,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) 공간적 범위: 경기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.
  - 2)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
    - 가)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.  
  
예 : 공고일이 201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,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- 나)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    - 3) 기존의 참여 실적(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)에 대한 기준
      - 가)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.

- 나)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·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,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.
- 다)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,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,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(예정)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.
- 라)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(횟수 및 금액)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·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.
- 4)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,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.

### 8. 선정 제외 대상자

- 가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나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5조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과징금,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### 9.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

- 가. 배분 절차
  - 1) 적용 항목: 상대평가 항목(“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” 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,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)
  - 2) 별지 “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”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.
  - 3)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.
  - 4)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,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.
- 나.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
  - 1)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.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,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.

- 2)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.
- 3)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

| 참여 업체 수<br>등급 구간 | 평 가 기 준 (등급) |   |     |   |  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|---|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가            | 나 | 다   | 라 | 마 |              |
| 1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(1) |   |   | 1개 업체 참여시 유찰 |
| 2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 | 1   |   |   |              |
| 3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 | 1   | 1 |   |              |
| 4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| 1 | 1   | 1 |   |              |
| 5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| 1 | 1   | 1 | 1 |              |
| 6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| 1 | 2   | 1 | 1 |              |
| 7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| 2 | 2   | 1 | 1 |              |
| 8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| 2 | 2   | 2 | 1 |              |
| 9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2 | 2   | 2 | 1 |              |
| 10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2 | 2   | 2 | 2 |              |
| 11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2 | 3   | 2 | 2 |              |
| 12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3 | 3   | 2 | 2 |              |
| 13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3 | 3   | 3 | 2 |              |
| 14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| 3 | 3   | 3 | 2 |              |
| 15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| 3 | 3   | 3 | 3 |              |

### 10. 기타 사항

- 가.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“자기 평가서”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시장·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.
- 다.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·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.
- 라.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.
- 마. 참여업체가 1개 업체(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)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(입찰)을 실시하되,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(☎031-828-88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 기준표(총괄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및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비 고      |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정성<br>정량 | 절대<br>상대 |    |
| ①<br>감정<br>평가사의<br>수<br>(10) | ①<br>평가 수행 사무소 등<br>소속 감정평가사의 수<br>(10점)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인 초과 | 8~10인 | 5~7인         | 3~4인       | 2인 이하    | 정량       | 절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| 8     | 6            | 4          | 2        |          |    |
| ②<br>감정평가<br>수행실적<br>(20)    | ②<br>감정평가법인등의<br>평가건수<br>(최근3년)<br>(15점)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    | 나     | 다            | 라          | 마        | 정량       | 상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| 13    | 11           | 9          | 7 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<br>감정평가법인등의<br>평가금액<br>(최근3년)<br>(5점)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    | 나     | 다            | 라          | 마        | 정량       | 상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 4     | 3            | 2          | 1        |          |    |
| ③<br>기존의<br>참여실적<br>(20)     | ④<br>기 참여 평가액<br>(최근3년)<br>(5점)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    | 나     | 다            | 라          | 마        | 정량       | 상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 4     | 3            | 2          | 1 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<br>기 참여 횟수<br>(최근3년)<br>(15점)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    | 나     | 다            | 라          | 마        | 정량       | 상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| 13    | 11           | 9          | 7        |          |    |
| ④<br>법규 준수<br>등 이행도<br>(30)  | ⑥<br>행정처분<br>(최근3년)<br>(30점)             | ○ 행정처분(징계) 횟수에 행정처분(징계)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<br>감점(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)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정량       | 절대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취소   | 등록취소  | 업무정지,<br>과징금 | 전책,<br>과태료 |   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| 3     | 2            | 1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|

##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(항목별 세부)

###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평가지표            | 소속평가사의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배점    |      | 10점  |       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절대) |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<br>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<br>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, 8~10인, 5~7인, 3~4인, 2인<br>이하로 구분한다. |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인 초과 | 8~10인 | 5~7인 | 3~4인 | 2인 이하 |
|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| 8     | 6    | 4    | 2     |

### ②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건수(최근 3년)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|
| 평가지표            | 해당업무 평가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배점 |    | 15점 |   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상대) |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구간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나  | 다  | 라   | 마 |
|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| 13 | 11 | 9   | 7 |
| 세 부<br>평가기준     |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.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‘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’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
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(최근 3년)

| 평가지표            | 해당업무 평가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배점 |   | 5점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|----|---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상대) |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구간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| 나  | 다 | 라  | 마 |
|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 4  | 3 | 2  | 1 |
| 세 부<br>평가기준     |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<br>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.<br>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<br>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'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'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. |   |    |   |    |   |

④ 기 참여 평가액(최근 3년)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-|----|---|
| 평가지표            | 기 참여 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배점 |   | 5점 |   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상대) |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,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수입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구간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| 나  | 다 | 라  | 마 |
|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| 4  | 3 | 2  | 1 |
| 세 부<br>평가기준     |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(예정)액 합계로 한다.<br>※ 시장·군수가 선정(시장·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)한 건에 한함. |   |    | 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③ 산정된 평가(예정)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‘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’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|    |   |

⑤ 기 참여 횟수(최근 3년)

| 평가지표            | 기 참여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배점 |    | 15점 |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상대) |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,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수입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구간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 | 나  | 다  | 라   | 마 |
|                 | 평점<br>(1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| 13 | 11 | 9   | 7 |
| 세 부<br>평가기준     | 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.<br>※ 시장·군수가 선정(시장·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)한 건에 한함.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|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‘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’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|

⑥ 행정처분(최근 3년)

| 평가지표            | 행정처분 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배점   |           | 30점     |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|
| 지표정의<br>(정량·절대) | 감정평가법인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(징계) 실적을 합산하여 감점한다.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지표산식            | ○ 행정처분(징계) 횟수에 행정처분(징계)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취소 | 등록취소 | 업무정지, 과징금 | 견책, 과태료 |  |
|                 | 평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| 3    | 2         | 1       |  |
| 세 부<br>평가기준     | ○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(징계) 횟수에 행정처분(징계)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.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, 등록취소, 업무정지,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,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,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.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③ 감정평가업자가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.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|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|

[붙임 1]

소규모재건축사업 감정평가법인 참여 신청서

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사 업 명: 금오동 한양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<br>나. 시 행 자: 금오동 한양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(조합장 김정석)<br>다. 사업개요<br>- 사업위치: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98번지 외 8필지<br>- 구역면적: 8,176m2<br>- 세 대 수: 199세대<br>- 건축규모: 지하1층/지상17층, 30,037.32㎡, 공동주택 3개동 및 부대·복리시설<br>라. 사업현황<br>- 2020. 8. 13.: 조합설립동의서 검인<br>- 2021. 12. 27.: 조합설립인가<br>- 2024. 12. 30.: 건축위원회 심의 |

「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제2항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4항, 「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상기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여 신청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입찰자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의 정 부 시 장 귀하

※제출서류: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각 1부.  
자기평가서(사실확인서류 포함) 각 1부.

[붙임 2]

자 기 평 가 서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| 평가점수     |          | 평점 산정 근거<br>(해당사항만 기재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신청자      | 선정<br>권자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정<br>평가사의 수<br>(10)   |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<br>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| 10점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정평가<br>수행 실적<br>(20)  | ② 감정평가업자의<br>평가건수 (최근3년)     | 15점 | 상대<br>평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감정평가업자의<br>평가금액 (최근3년)     | 5점  | 상대<br>평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존의<br>참여 실적<br>(20)   | ④ 기 참여평가액<br>(최근3년)          | 5점  | 상대<br>평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기 참여 횟수<br>(최근3년)          | 15점 | 상대<br>평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규 준수<br>등 이행도<br>(30) | ⑥ 행정처분 (최근3년)                | 30점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점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상기 자기평가서는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“허위·거짓 등”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입찰자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※증빙서류: 사실확인서류 각 1부.